200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교정시설 관련 자료"

행정자치부, 2003

기 관 명	공 개 사 례	비 공 개 사 례
한국국제교류재단	- 해외 한국연구 지원방법 - 해외 한국학자료 지원방법 - 한국어교육 지원안내 - 대학원생 장학제도안내 - 국제교류 자원봉사방법 - 신규직원 채용방법/시기 - 재단 재원조달현황 - 사업지원방식/절차	
법무부	-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 수용자 청원조사시 본인 진술조서 - 수용자청원처리지침 - '02년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외부 병원진단서 사본 - 청구인 본인의 영치금 사용내역 -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현황 - 체류 외국인 통계현황 - 중국선원 소재불명 처리대장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추천자 - 참고인 진술조서 등 조사서류 - 발송이 불허된 자신의 서신에 대한 불허처분 및 징벌처분서류 사본 - 수용자관련 조사자료 및 교도관근무일지 - 문제수용자 지정서류 일체
국방부	- 국가유공자심사를 위한 의료관련 자료 - 한국전쟁 정전협정당시 기록 - 걸프전 관련자료 - 장관 봉급내역 및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제주4.3사건 관련자료	- ○○○ 재판기록 일체 - 삼청교육대 특별법제정 관련자료 - 국방부 FX사업 기종결정 평가결과 및 기준자료 - 군 사망자 ○○○일병 수사자료일체 - 군에 보급된 살충제, 제초제 연도별 보급량('67~80년도)
합동참모본부	- 군사시설보호관련 자료	- 육군 불의사고와 사망건수 - 간첩 포획자 확인
육 군	- 의정장교 임용기준 - 장교 신체검사기준	- 현역 육군 불의사고와 사망건수 현황 - 간첩 포획자 확인
해 군	- ○○지역 군용지매각 관련서류	
공 군	- 항공기엔진 유지비용	- 보유 항공기 및 엔진현황 - 대일 청구권자료 - 제○○전투비행단 비행기 출격횟수

III.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1. 행정소송 사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01구 4253호 대전고법 2002누 651호,
대법원 2002누 12854호

피　　고 : 공주교도소장

사건개요

- 원고는 2001. 8. 17. 공주교도소 수용당시 기증금품 관리지침 등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여 2001. 9. 20. 공주교도소 정보공개심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10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하여는 공개키로 결정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비공개 결정 통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각하

○ 이 사건 소 중 기증금품관리지침 및 주요문서목록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2. 2. 22. 정보공개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 기증금품접수대장, 교화활동사항기록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2001년도 수용자 교육현황과 교육예산 집행내역,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용자 사책구입 거래업체 선정방법 및 그 기준과 계약관련자료 일체, 동 기간 중 수용자 신문구독현황과 구독신청 신문부수 대비 각 신문사별 무가지 공급부수 및 공급된 무가지 신문의 사용방법과 내역에 대하여는, 기증금품접수대장 등에는 기증자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이며, 무가지 신문공급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은 정보이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및 그 현황 등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이며, 사책구입거래업체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 같이 법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를 구할 실익이 없고, 또한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이고, 수용자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02구합 1762호

피　　고 : 광주교도소장

사건개요

- 원고가 2002. 3. 11. 피고에게 ① 1일 교무과장제도 운영실태, ② 교육·교화운영계획서, ③ 복지상담활동기록부, 교정위원(종교·교화)활동사항기록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3. 12. 비공개 결정함.
- 2002. 7. 11.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청구함.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각하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2002. 3. 11.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5. 위 비공개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이 2002. 7. 11. 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된 후의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2002.3.15. 비공개결정통지서를 수령받은 즉시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그 날 16:50경부터 같은 해 7. 2.까지 청송제2교도소의 징벌실에 수용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불변기간인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의 제소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금원지급청구소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사건 : 2001구49797

피　　고 : 용산세무서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1.2.10. 피청구인에게(국세청장 경유) 허위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찬성한 위원명단 포함)의 명단·직책·집 주소 등의 공개를 요청
- 피청구인이 2001.3.9.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성명·직책·관련 업무등은 공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찬성한 위원명단 포함)의 명단·집 주소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집 주소는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4.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4.16. 기각결정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과세관련 공무원들의 주소는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제1호) 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익관련 정보(제3호)로 볼 수 없고, 또한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6호)에 해당된다 할 것임

○ 원고가 과세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형사고발을 함에 있어서, 굳이 소장이나 고발장에 해당 공무원들의 주소를 적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의 이름과 처분 당시의 근무처를 적는 것만으로도 그 대상 공무원들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관련 공무원들의 주소는 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행정심판 재결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2002행심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1. 12.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홍성교도소에서 실시한 수용자용 심리검사에 관한 관련자료 이체(검사결과 등) 외 12건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7. 17.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청구인에 대하여 홍성교도소에서 실시한 수용자용 심리검사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검사결과 등)외 5건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4. 1. 비공개된 정보 가운데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및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심판 내용>

▶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 청구인은 2001. 12. 27.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 17.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은 1989년과 1984년에 각각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이 건 심판이 제기된 후 위 규칙 및 지침과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수용자자비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 및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을 추가로 2002. 4. 10. 공개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 12. 27.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의하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제출·사용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의 발령번호와 발령일자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의 문서번호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 당시의 적용되고 있었던 훈령 및 지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과 개정된 수용자자비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 및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한 것임.

○ 피청구인은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본의 교부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반인과 달라 법령집을 쉽게 접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다시 수용기관에 신청하여 열람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에는 수용자 교정·교화기법, 교정사고 조사기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2002행심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 7.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2002년도 전국수용자 교육비 총 예산 금액, ② 2002년도 전주교도소에 배당된 수용자 교육비 총 예산 금액, ③ 2002년도 전국 수용자 의료비 총 예산 금액, ④ 2002년도 전주교도소에 배당된 수용자 의료비 총 예산 금액, 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 ⑥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⑦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⑧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⑨ 교정국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2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⑤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 ⑦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에 대하여는 각 비공개 결정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한 사본 출력물에는 원본대조필증과 간인이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낸 수입인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의 정보공개는 부적법하며, 「교정협회와의 협의계약서」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교정협회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을 독점공급하고 있어 교정협회와 법무부간에 협의계약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은 청구인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알권리가 있고 잘못된 교정행정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수용자란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청구를 제기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사본 출력물에는 원본대조필증과 간인이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낸 수입인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의 정보공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정보가 사본임을 명시한 사실이 분명하고 법이나 법시행령에서 원본대조필, 간인 등을 적거나 수입인지 등을 부착한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본대조필, 간인이 누락되어 있고 수입인지가 통지서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사본우송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 피청구인은 교정협회와의 사이에 별도로 협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공기관이 법률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지침에는 수용자 교정·교화기법, 교정사고 조사기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함.

대구지방교정청, 사건 : 2002행심제6호

피청구인 : 대구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1. 2. 27. 대구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시 본인의 사책대장이 없어진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주장, 청구인은 사책대장관련 당시 사책담당, 교무과장, 소장의 성명을 공개하고, 문신건관련 수용자 3명, 기결2하 담당근무자 성명과, 온수건관련 수용자 ○○○의 수번, 사동근무자, 관구교위, 관구교감의 성명을 공개하라고 주장
- 청구인의 사책대장은 대구교도소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 사책대장 관련자 성명, 문신건 관련자 성명, 온수건 관련자 성명 등은 청구인의 신분관계서류의 조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관계서류 일체는 현 수용교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행정심판법 제4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와같은 취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고 행정심판의 종류로 규정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취지를 살펴보면 사책대장이 없어진 사유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문신건 관련 수용자, 온수건 관련 수용자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한 고소, 고발을 목적으로 관련직원 및 수용자의 성명을 공개하라는 것인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위 사람들의 성명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또한,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성명을 밝혀 수사를 할 것이며, 이미 청구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여 2001. 12. 28. 각하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2. 1. 17. 항고장을 제출하여 수사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비공개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

대구지방교정청, 사건 : 2002행심제8호

피청구인 : 대구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사항 중 "수용자교화에대한기본계획", "문제수용자상담부", "교화회유계획서"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
- "수용자교화에대한기본계획"은 수용자 교화작업 관련자료로서 교육교화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대외비적인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
  "문제수용자상담부"는 상담자가 피상담자인 수용자에 대한 행동관찰과 수용관리 처우 등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등을 담고 있는 교정에 관한 사항이며 상담부를 공개할 경우 피상담자가 상담내용에 불만을 품을 여지가 있으며 출소 후 위해 등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
  "교화회유계획서"는 비밀로 분류된 문서이며, 또한 비밀취급인가자의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비공개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수용자교화에대한기본계획"은 수용자 교육교화운영지침 및 각종 법령·예규·지시공문 등에 의거하여 수용자 교육교화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교정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정참여인사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 판단되며,

○ "문제수용자상담부"는 문제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피상담자인 수용자에 대한 행동관찰과 수용처우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등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대구교도소 수용 중 교무과 상담자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교도소 수용기간인 2001. 4. 6. ~ 2002. 2. 25.(10개월)까지 교무과 교회사가 8회, 교무과장이 1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 "교화회유계획서"는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처우요강에 의하면 일반수용자의 교화활동에 대한 계획서가 아닌 공안사범들에 대한 개인별 교화계획으로서 비밀취급인가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 비밀문서(대외비)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대구지방교정청, 사건 : 2002행심제26호

피청구인 : 대구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본인의 과거 교도소 수용시(1996. 7. 6. ~ 2001. 7.29.) 소송관계서류 및 조사·징벌처분의서류일체를 공개하라고 주장
- 법원 등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서류(수신서류)는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할법원 등이 소송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으로서 이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던 서류이므로 문서생산기관이 아닌 당소에서 공개·비공개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소송관계서류는 형집행 등 교정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법원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보관하고 있는 서류이므로,
  청구인은 원하는 소송관계서류를 해당법원 등 문서생산기관에 등사, 열람신청하여 발부 받아야 할 것이며,
- 청구인이 소송수행 중 작성하여 발송한 소송관계서류(발신서류) 중 고소장, 항고장, 진정서, 질의서, 각종 청구서 등은 청구인이 생산(작성)한 서류의 사본으로서 당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사항이 아니고 그 서류의 접수기관에 등사, 열람신청하여 발부 받아야 하며,
- 청구인이 청구한 조사·징벌처분의 일체 기록은 교정시설내에서 청구인과 타 수용자간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록으로서, 위 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선의로 참여한 목격자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생명, 신체의 위험 또는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또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목격자 등의 진술내용은 보호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조사·징벌관련기록 일체를 공개해 주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개를 요구한 조사관련 서류에는 청구인 본인과 상대방, 그리고 참고인들의 자술서 및 진술조서, 근무자의 근무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중에는 관련자들의 수번, 성명, 죄명, 형기, 만기일 등 개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노출되었을시 수용중이나 출소 후 보복 등 위해 가능성이 있으며,

○ 또한 조사에 참여한 관련수용자가 직접적인 보복은 아니더라도 타 수용자에게 청구인의 규율위반 조사에 참여하여 수용기관에 협조하였다는 소문만으로도 타 수용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원활한 교정처우와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 징벌처분과 관련된 서류에는 징벌요구서, 징벌의결서,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위원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특정개인의 인격손상이나 징벌위원회의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 청구인이 본인의 소송관련 기록일체를 공개해주지 않음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송수행중 법원이나 검찰청에 송달한 서류는 청구인이 생산(작성)한 서류들이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발송한 서류는 이미 청구인에게 송달된 서류들로서 그 내용은 청구인이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며 꼭 공개가 필요한 것은 해당법원이나 검찰청에 등사·열람신청을 하여 발부 받으면 되는 것이고 원활한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청구인의 기본철에 편철해 둔 약 800매에 달하는 소송서류 사본 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것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됨.

대구지방교정청 : 2002행심제16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부산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 5. 14. 부산교도소 용도과 주부식 급여 결과보고서 및 급양의 예산집행현황 보고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음.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월중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및 식단별 소요재료, 수용자 정신교육 교안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2. 5. 14. 수용자 1인 주부식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매월 작성하는 수용자 식단표 및 소요재료표에는 부식의 종류, 수량, 단가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수용자 식단표를 거실 및 취업장 등에 부착하여 모든 수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수용자 정신교육 교안에는 수용자 1인 1일 급양비는 주부식, 연료비 포함 2,453원임을 적시하여 수용자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모든 수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부식물 관리대장, 부식물 재고량 현황 기록, 주부식 급여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한 정보의 범위가 특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의 서류는 2001년도 생산량이 A4 규격으로 4,000매가 넘는 등 내용이 방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의 주된 취지인 수용자 1인당 주부식 급여에 관한 사항은 수용자 1인당 부식의 종류, 수량, 단가 및 소요재료 등이 표시된 수용자 식단표를 매월 거실 및 취업장에 게시하여 모든 수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고, 수용자 정신교육시에도 수용자 1인 1일 급양비는 2,453원임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 이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대구지방교정청 : 2002행심제18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부산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 8. 6. 부산교도소에 대구교도소 수용당시 청구인의 징벌집행 관련 작성한 진술조서 4건과 불법 작성한 청원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음.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의 본건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해보면,

- 청구인이 대구교도소 수용당시 규율위반으로 조사 받을시 작성된 진술조서 및 자술서, 부정 작성된 청원서를 공개하지 않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조서나 자술서를 공개하여도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고, 구제수단으로 현재 방어권 행사나 쟁송이 진행중인 것도 없음은 물론, 그 내용중에는 공개되면 교도관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부분도 있고 선의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 공개하지 않음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청구인이 불법으로 작성 유출시킨 청원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불법으로 작성 유출시킨 청원서는 처분청에서 보관하는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됨.

대구지방교정청 : 2002행심제20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부산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부산교도소에 제헌절날 수용자들에게 지급한 특별급식에 대한 내역, 부식비 및 양곡절약분에 대한 내역, 제헌절날 조·중·석식때 수용자에게 지급한 주부식에 대한 내역을 공개청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내용이 불충분하니 더욱 명료히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의 본 건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해보면,

- 제헌절날 특별급식으로 닭백숙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했으나 닭백숙에 필요한 충분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특별급식비는 수용자 1인당 1천원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책정된 금액에 맞추어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 제헌절날 중식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헌절날 특별급식으로 닭백숙을 급여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중식지급이 필요치 않았으며,
- 관계직원이 양곡 절약분(잉여분)은 수용자 급양관리지침에 의거 잉여 즉시 재수입 조치하여 급양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급양비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부대경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절약된 양곡비의 지출내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관련규정과 함께 설명해 주었으므로 양곡 절약분에 대한 정보공개가 불충분하다 할 수 없음.

대구지방교정청 : 2002행심제21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부산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용 중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받을시 작성된 진술조서 및 자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음.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의 본 건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해보면,

- 2002. 3. 4. ~ 3. 8. 대전교도소에서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조사받을 시 작성된 진술조서 및 자술서, 2001. 12. 10. 대전교도소 직조공장에서 구타건으로 조사 받을 시 작성된 진술조서 및 자술서를 공개 해주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진술조서와 자술서는 교정시설내에서 발생한 규율위반 사건들에 대한 조사기록으로서 목격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일부를 공개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을 분석하면 진술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선의로 조

사 과정에 참여하게 된 목격자들이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받을 우려가 있고, 조사내용 중에는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교정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됨.

광주지방교정청 사건 : 행심제7호

피청구인 : 군산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1. 10. 19. 수용중인 군산교도소에 법무부의 수용자 1년 부식예산의 내용공개 및 군산교도소의 1년 부식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신청
-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는 헌법 제21조에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 처분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기획예산처 작성 지침에는 순수부식비에 대한 내역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무부의 수용자 1년 예산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 군산교도소에서는 매월 식단표를 작성 공개하므로 모든 수용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수용자 식단표에 부식의 종류와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어 수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감시라는 명분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됨.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12호

피청구인 : 청송제2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교정예규 전체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
-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교정예규"에 대해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교정예규"는 법무부로부터 지시된 각종 예규, 지시공문 등을 수록한 교정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서로써 그 분량이 1,6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고, 그 내용 중 다수가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 근무에 관한 사항, 총기, 탄약 등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며 또한 일부 공개가능한 부분은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교정예규 전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17호

피청구인 : 청송제2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교정예규 중 수용자 청원처리 지침 등 41종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또한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의 2002-12호 사건에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청구
-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는 재소자 영치금 사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 외 2종류는 공개하고 나머지 38종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2 - 12호" 결정에 관한 재청구는 각하, 나머지는 기각

○ 청구인이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2 - 12호" 에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교정예규는 그 내용 중 대다수가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 근무에 관한 사항, 총기, 탄약 등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며, 또한 일부 공개 가능한 부분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은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심판법 제39조(재심판청구의금지)를 살펴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결청인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다시 취소 청구함은 위법으로 판단되며
- 2002. 5. 28. 청송제2교도소에서 정보공개 부분공개한 결정 중 수용자 청원처리 지침 등 38종류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호근무준칙을 제외한 대부분이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2 - 12호" 에서 "비공개 결정" 된 교정예규들이라 비공개하는 것이 당연하고, 계호근무준칙은 법무부령 52호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 비공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2행심19호

피청구인 : 대전지방교정청장

사건개요

- 원고는 2002. 4. 25. 피청구인에게 '주요문서목록'외 8건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1999년도 홍성교도소 의료예산집행내역' 및 '1999년도 홍성교도소 의료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자료 및 교정청 감사결과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홍성교도소로 이첩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02. 5. 1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재소자 교육교화에 대한 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열람으로 공개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공개 이첩처분의 취소와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및 정보공개 방법을 취소할 것을 청구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의 청구중 '1999년도 홍성교도소 의료예산집행내역' 및 '1999년도 홍성교도소 의료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보고자료 및 교정청 감사결과와 내용'에 관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니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지침' 등 비공개 정보사항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며,

○ '열람'에 의한 정보공개는 동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 대전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2행심03호

피청구인 : 대전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1. 4. ~ 2002. 7.까지의 영치금사용신청서, 근무직원명단, 자변식품 입찰에 관한 모든 내역, 교무과에서 청구인이 자비부담으로 신청한 도서, 자비부담 도서업체 선정과정과 입찰에 관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 피청구인은 위 청구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여 비공개처분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영치금 사용신청서는 개인별 또는 다수인의 기록이 취합된 문서이므로 타인의 개인신상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대한 자료를 공개시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며, 담당근무자의 명단은 동법 제7조제1항제5호, 제6호 대상이며, 자변식품 입찰에 관한 자료는 동법 제7조, 자비부담 도서 업체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존재 및 동법 제7조제5항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이고, 시설보수 및 그 집행내역 역시 동법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8조제2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타당하다.

사건번호 : 대전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2행심04호

피청구인 : 대전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3. 8. 교도소내 준수사항 위반으로 금치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청구인의 외부병원발행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서신발송대장, 2002. 3. 8. ~ 4. 7. 관련 징벌위원회 의결서 및 조사내역서, 2002. 9. 11. ~ 13. 관련 훈방조치 조사결과서 및 보고서, 단식에 관한 법무부 보고서, 교회사 활동내역서, 수용자 진료에 대한 연간예산, 1인당 의료비 지급액 및 진료비 사용내역서, 약품구입비 등을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유로 공개신청하였으나,
-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사항 중 2002년도 의료예산, 1인당 지급액, 진료비 사용내역서 등을 청구인과 관련된 사항만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비공개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제기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내용 중 각종 진단서, 소견서는 가족이 외부병원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서신발송대장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며,

○ 2002. 3. 8. 관련 징벌위원회 의결서 및 조사내역서는 동법 제7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이며, 2002. 9. 11. 훈방조치와 관련된 조사결과와 보고서 등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불식과 관련된 법무부 보고서와 교회사 활동내역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고, 2002년 수용자 의료예산, 1인당 지급액, 사용내역서 등은 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결정을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대상문서의 방대함, 개인정보포함, 진행중인 세부예산에 대한 공개시 직무수행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및 동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비공개 결정은 타당하다.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행심06호

피청구인 : 광주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4. 3. 수용중인 광주교도소에 2000. 11월부터 2002. 2월까지의 청구인관련 진료기록카드 및 징벌집행기록부를 정보공개 청구
- 진료기록, 징벌집행기록부는 수용자의 신분처리 즉 처우전반에 대한 의견이 기록된 것으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교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신분장 등 수용자관련문서는 교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참고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교정당국만이 직무상 알아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문서로써 수용자에 대해서 기밀성을 가지며, 타 공공기관의 문서에 비해 범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기밀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신분장과 관련하여 부속되는 서류로 볼 수 있는 의무기록부 및 징벌집행부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처분은 적법·정당한 처분임.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행심13호

피청구인 : 광주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7. 22. 수용중인 광주교도소에 '가석방심사등에대한법무부령'의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가석방심사등에관규칙'은 이미 공포되어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가석방심사에 대한 법무부령은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을 말하며 이는 이미 공포되어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출판물 등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로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결정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행심22호

피청구인 : 광주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 9. 2. 재소자복지담당관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같은 해 9. 5. 교정국하달 수용자 복지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같은 해 9. 6. 수용자 교화방송에 관련된 규정 및 지침, 같은 해 9. 4. 교정예규집에 나와 있는 목록일체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
-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만을 열람공개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재소자 복지담당관제 운영방안, 복지전담일지, 중장기 처우자 관계철 등은 폐지된 사항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서 각 정보의 존재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정보가 부존재하여 공개가 불가능하고,

○ 수용자 복지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 2002년도 교화업무지침 중 복지관련사항 일체, 수용자 교화방송에 관련된 규정 및 지침 및 2002년도 교화업무 지침집 목록 등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불분명하며, 또한 그 내용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수용자

를 관리하기 위해 자기 사용목적으로 만든 자료로 피관리자로서 교정·교화의 객체 및 대상인 수용자들에게 기밀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공개한다면 적정한 교정·교화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 자매결연상담부, 교화종교위원활동 관계철 및 기증금품관리대장 등에는 기증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직장,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 교화에 대한 기본계획 및 수립관계철도 수용자 교육·교화운영계획을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내용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자기 사용목적으로 만든 자료로 피관리자로서 교정·교화의 객체 및 대상인 수용자들에게 기밀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공개한다면 적정한 교정· 교화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행심17호

피청구인 : 전주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 6. 28. 기금품관리사항, 금전출납부, 소모품관리대장, 비소모품관리대장, 기증품관리대장, 중요물품사용관리부, 생활지원금관리대장, 종교위원명단, 교화위원명단, 교화기자재관리대장, 교정연합회 관계철, 문제수관리대장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의거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기금품관리사항, 금전출납부, 생활지원금관리대장 등은 각 정보의 존재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정보가 부존재하여 공개가 불가능하고,

○ 소모품관리대장, 비소모품관리대장, 기증금품관리대장, 중요물품관리사용부, 교화기자재관리대장, 교정위원 위촉 및 해촉현황과 교정위원명단 등 교정연합회 관련철 등에는 기증자 등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직장,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자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서 피관리자인 청구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공개할 실익이 없는 정보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형의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행심09호

피청구인 : 전주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 4. 20. 주요문서목록, 정보공개처리대장,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등에관한규정,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총액과 판매소장(전주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2001년도 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결과와 2002년도 직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서, 수용자 외부병원이송진료와 관련하여 외부병원이송진료자 수, 외부병원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 현황, 외부병원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지급현황, 외부병원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대비 예산지급액, 외부병원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외부병원협의서,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하여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수용자신문구독대금의 예산지급대비 자비부담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등에관한규정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나머지 청구는 비공개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주요문서목록에 대해서 열람공개는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사본출력물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주요문서목록의 열람·이용을 불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접수일시, 청구인, 청구목적, 내부의사 및 심의과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 청구인 관련사항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결정사항도 함께 편철되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제6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및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은 폐지되어 현존하지 않는 문서이며, 동 내용을 청구인은 이미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청구하여 2002. 4. 10. 법무부장관결정통지서로 열람한 바 있다.

○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총액과 판매소장(전주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중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총액은 동법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 2001년도 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결과와 2002년도 직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서 중 2001년도 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결과는 동법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2년도 직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동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 수용자 외부병원이송진료와 관련하여 외부병원이송진료자의 수, 외부병원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 현황, 외부병원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지급현황, 외부병원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대비 예산지급액, 외부병원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외부병원협의서 등의 자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서 피관리자인 청구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개할 실익이 없으며, 타 수용자들의 진료정보 및 현황 뿐만 아니라 형집행을 관리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고유정보가 수용자들에게 누설될 경우 형의 집행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칠 것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비공개함.

○ 수용자 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하여 각 신문별 구독 신청자 수, 수용자 신문구독대금의 예산지급대비 자비부담액 등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만든 자료로 피관리자인 청구인과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개할 실익이 없으며, 공개될 경우 신문업체의 사회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동법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용자신문구독대금의 예산지급대비 자비부담액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행심02호

피청구인 : 군산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1. 10. 19. 청구인의 서신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계호근무준칙 제253조에 의거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서신표가 교정관련문서로서 자기사용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문서이기는 하지만 제3자 관련성이 없으며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행형법시행령 제62조, 계호근무준칙 제251조에 의거 서신 수·발신 발생시 허·불허에 대한 내용은 당시 본인에게 고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서신표가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행심20호

피청구인 : 군산교도소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 9. 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산교도소에 진정인 ○○○에 관련 요구한 서류일체와 제출한 서류일체 및 '99. 12. 29.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교도소 담당근무자 경위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원신청서와 청원결정서는 공개하였으나, 신분카드 및 담당근무자 경위서는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부산교도소 담당근무자 경위서는 정보의 존재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정보가 부존재하여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며,

○ 수용자신분카드는 수용자의 신분처리 즉, 처우전반에 대한 의견이 기록되고, 그 문서의 작성목적이 교정당국만이 직무상 알아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사용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문서로 수용자에 대하여 기밀성을 가진다고 볼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 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3. 이의신청 사례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처리 결과	이 유 (처리결과요지)
1	감사원 심사청구 대리인별, 세목별 신청 및 처리현황과 대리인별, 청구가액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를공개	감사원	각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사항은 감사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함
2	'98년부터 '02년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 운영보고서 일체	감사원	취하	
3	'02.2.26. 비공개 결정한 취지는 이해하나 개인신상정보는 제외하고 사실 진위여부와 간략한 감사결과 및 관련된 ○○공사 부서명 등을 공개	감사원	기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
4	관인등록대장의 열람 및 그 사본 청구에 대하여 열람만 가능하다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법에 위배되므로 사본도 공개	감사원	각하	관인등록 대장을 '02.8.12. 열람장소, 일자 등과 함께 공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사본 제출은 '총무처 공고 제1993-27호'에 공고한 것과 일치하므로 위 관보를 이용바람
5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6호 단서에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공개하여야 함	감사원	일부 인용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기 위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분 공개함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처리결과	이 유 (처리결과요지)
6	부산시교육청 감찰결과 금품수수로 적발된 4명의 명단 및 금품수수 장부 공개요청	국 무 조 정 실	기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타당 또한, 국무조정실은 본 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아직 교육부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부당하게 관련자 명예를 훼손할 우려
7	'02년 출자총액 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기업집단별, 기업집단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 - 상기 출자 총액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	공정거래위원회	기각	개별기업별 출자총액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에 대한 정보는 공정거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비밀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 시행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 동 법 제69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해 제출된 개별기업의 정보는 법 목적 이외의 공개나 공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8	미래금고 보험금 지급관련하여 보험금 지급현황 등	예금보험공 사	기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규정이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해당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처리 결과	이 유 (처리결과요지)
9	브라운 각서	외 교 통상부	취하	·
10	법무부장관 청원조사 내용	법무부	기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6호에 따라 청원조사 내용에 교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11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추천자	법무부	기각	민영교도소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위원명단등이 공개될 경우 위원 개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동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12	수용자 교육·교화 예규, 지시공문 등	법무부	기각	청구 내용이 불특정하고 공개범위를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비공개
13	검찰 제2과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부서에 해당하는지 추가 문의	법무부	인용	검찰 제2과는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뿐 개별적인 사항은 대검에서 일선 검사를 지휘·감독
14	향정사범에대한 처우기준 규칙	법무부	기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이 곤란할 우려있어 비공개
15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 행정 예규집	법무부	기각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 행정 예규집" 청구에 대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공개 결정한 것과, 사본·출력물이 아닌 "열람" 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이유 없음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처리 결과	이 유 (처리결과요지)
16	법무부 주요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	법무부	기각	우리 부에서 공개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 및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은 청구인이 공개요구 사항과 동일한 목록 및 편람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음
17	3년간의 기증품 접수내역	서 울 구치소	일부 인용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 의거 1년분으로 제한
18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	서 울 구치소	기각	생산년도 등이 불특정된 주요문서목록의 공개는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이유 없음
19	본인 진료기록부	안 양 교도소	기각	직무수행상 현저한 곤란을 초래
20	서신 수발대장 및 진료기록부	안 양 교도소	기각	직무수행상 현저한 곤란을 초래
21	접견부 사본	안 양 교도소	기각	부 존재
22	수용자 교화에 대한 기본계획 등	대 구 교도소	기각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각
23	수용당시 조사기록 일체	대 구 교도소	기각	선의로 조사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 등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기각
24	접견표 기록	대 구 교도소	인용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
25	①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시 결정과정 ②비공개 이유가 "정보공개 신청한 사항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라고 명시하였는데 제3자 의견진술서 등으로 확인한 후 비공개결정을 하였는지 여부	청 송 교도소	기각	①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조요청에 의해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 회신받은 내용을 기관장이 결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②교정 참여인사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주장은 이유없어 기각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처리 결과	이 유 (처리결과요지)
26	출소자 ○○○ 입·출소 날짜	부 산 구치소	인용	청구인이 출소자 ○○○와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출소자의 생년월일, 죄명, 처분결과, 사건번호, 출소년도 등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바, 단지 정확한 출소날짜를 청구하므로 공개함이 타당
27	①각 부서별 주요문서목록 부분공개 처분에 관해 ②교정관련업무편람과 법무부지시공문(수용자처우 관련) 비공개처분에 관해 ③정보공개편람 비공개처분에 관해 ④본인의 신분카드 및 기본철 비공개 처분에 관해	부 산 교도소	일부 인용	①각 부서별 주요문서목록 부분공개 처분에 관해 보안과 주요문서목록 공개 ②교정관련업무편람과 법무부 지시공문(수용자처우 관련) 비공개처분에 관해 일부 인용 ③정보공개편람 비공개 처분에 관해 기각 ④본인신분카드 및 기본철 비공개처분에 관해 기각
28	2000. 5. 15. 청구인이 작성한 청원형식의 서신 사본 1부	부 산 교도소	기각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서신으로 행형법 제18조의2제5항에 의거 폐기처분하고, 이유없어 기각
29	①징벌서류일체 및 병사 근무자 제출 서류 ②관구교감 의견서 및 동 정보고서	마 산 교도소	기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30	문제수 지정과 관련된 신분카드 시찰공개	마 산 교도소	기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31	계호근무준칙 및 외부병원 입원 수용자 계호근무수칙	청 송 제1보호 감호소	기각	수용자에게 공개할 경우 일선 교도관의 근무방법이 노출되어 업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게 되고, 계호업무상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처리 결과	이 유 (처리결과요지)
32	직업훈련생, 교육생 예산의 규모 및 집행내역	청 송 제1보호 감호소	기각	2002년도 직업훈련생 예산 편성 및 운영내역은 그 정보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집행내역에는 구입 거래처 및 타 수용자의 처우관련 개인정보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33	조사관련 서류 (관련수용자 진술조서)	청 송 제1보호 감호소	기각	조사관련 서류 중 타인의 자술서 및 진술조서는 개인정보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제6호에의거 비공개
34	조사관련 서류(관련 수용자 진술조서), 타 수용자의 진료기록, 근무자 경위서 등	청 송 제1보호 감호소	기각	조사관련서류 중 타인의 자술서 및 진술조서, 진료기록, 근무자경위 등은 개인정보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거 비공개
35	수용자 신분카드 기록내용, 기증금품 접수 및 사용내역, 구매물품의 입찰내역, 수용자 분류심사카드 기록내용	청 송 제1보호 감호소	기각	수용자신분기록, 분류심사카드기록, 기증금품 접수 및 사용내역, 입찰내역 등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에 의거 비공개
36	본인의 소송서류에 첨부된 증거서류(4매) 및 교도관 근무기록 내용	청 송 제1보호 감호소	기각	본인이 제출했다는 소송서류의 증거서류(4매)에 대한 정보는 없으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교도관 근무일지 기록내용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
37	본인의 접견기록	청 송 제2보호 감호소	기각	이혼한 처와의 접견기록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에 관한 정보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처리 결과	이 유 (처리결과요지)
38	수용자 신분카드 기록내용, 기증금품 접수 및 사용내역, 구매물품의 입찰내역, 수용자 분류심사카드 기록내용	청 송 제1보호 감호소	기각	수용자 신분기록, 분류심사카드 기록, 기증금품 접수 및 사용내역, 입찰내역 등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에 의거 비공개
39	본인의 소송서류에 첨부된 증거서류(4매) 및 교도관 근무기록 내용	청 송 제1보호 감호소	기각	본인이 제출했다는 소송서류의 증거서류(4매)에 대한 정보는 없으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교도관 근무일지 기록내용은 정보 공개법 제7조제1항4제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
40	본인의 접견기록	청 송 제2보호 감호소	기각	이혼한 처와의 접견기록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6호에 의한 개인정보로 비공개
41	감호자자치제시행계획의 법무부장관 인가여부	청 송 제2보호 감호소	기각	청구정보는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규칙 제35조 및 제38조를 근거로 한 내부결재사항임
42	행형법등 행형 전반에 걸친 제규정 및 행정심판법	청 송 제2보호 감호소	기각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및 행형 전반에 걸친 제규정으로 총 30건에 이르러 청구량이 과다
43	독거 시찰의 허가사유	청 송 제2보호 감호소	기각	수용자의 거실수용에 있어 독거가 원칙이며, 시찰관련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44	재소자 건강진단규칙	청 송 제2보호 감호소	인용	재소자 건강진단규칙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이므로 비공개 하였으나 수용자 신분을 감안, 인용공개
45	수용자, 직원, 경교대 약품지정 및 구입에 관하여	청송제2 교도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각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처리결과	이 유 (처리결과요지)
46	수용자 신분카드	청송제2교도소	기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기각
47	교정예규 중 수용자 청원처리지침 외 38종류	청송제2교도소	기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의거 기각
48	수용자치료비지급지침	청송제2교도소	기각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각
49	기증금품관리대장 외 13건	진 주 교도소	기각	행정감시의 구체성 결여 및 실익없음
50	재소자 보건의료 및 환자 관리철저 외 9건	진 주 교도소	기각	교도관 직무에 관한 사항
51	주요문서목록 외 66건에 대한 이의 신청	진 주 교도소	기각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 및 제14조에 의거 기각
52	원계급 복귀처분에 대한 임시분류처우회의심사록 외 2건	진 주 교도소	기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등에 의거 기각
53	진료소견서 외 2건	진 주 교도소	기각	열람 후 이의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임
54	소장님 처우개선 지시관련 서류 외 2건	진 주 교도소	기각	열람 후 이의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임
55	재소자교육교화기본계획 국가인권위원회진정등업무처리지침	대전지방교정청	기각	재소자교육교화기본계획은 부존재 문서이며 국가인권위원회진정등업무처리지침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비공개
56	계호근무준칙	공 주 교도소	기각	요청한 정보공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
57	교정예규	홍 성 교도소	기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처리결과	이 유 (처리결과요지)
58	①분류심사표,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결과 ②청구인의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③급별 분류수용 처우, 급외의 등급 처우기준 ④청구인에 대한 급외의 등급	광 주 교도소	일부 인용	분류심사표,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결과와 청구인의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은 청구인 개인에 관한 신상자료일지라도 분류심사의 객관성, 신뢰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워 기각하고, 급별 분류수용 처우, 급외의 등급 처우기준은 청구인이 정보를 쉽게 취득하기 곤란한 수용자임을 고려 열람 공개하고, 청구인에 대한 급외의 등급은 개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열람 공개
59	①복지전담일지, 특별관리 대상자 명부 ②기증금품접수대장 ③사책입찰계약 및 공급가액 ④교정위원활동 및 교화협의회 운영지침	광 주 교도소	기각	복지전담일지는 폐지업무로 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며, 특별관리대상자명부, 기증금품접수대장, 교정위원 활동 및 교화협의회 운영지침은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 및 교도소의 관리·운영 등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사책입찰계약은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공급가액은 구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영치금 사용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있는 내용으로 기각
60	주요문서목록 등 9가지 항목의 비공개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전 주 교도소	비공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주요문서목록 등 일반국민에게 열람제공』에 의거, 열람토록 했으나 사본을 요구하여 사본, 출력물은 허가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 이미 법무부에 청구하여 공개 받았던 사항을 반복 계속 청구하여 교정행정에 지장을 초래함.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분기관	처리 결과	이 유 (처리결과요지)
61	신분장 기록내용 공개	군 산 교도소	기각	수용관리 및 형집행사항에 관한 각종법령, 훈령, 지침, 내규 등의 적용사항으로 만약 공개될 경우 향후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타 수용자와의 교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공개 곤란
62	계호근무준칙 내용 공개	군 산 교도소	기각	계호근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규정한 법무부훈령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비공개
63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문서의 제목과 접수기일이 표기된 확인증 또는 증명서 발행	제 주 교도소	기각	공개문건이 불명확하고 정보를 새로이 가공 후 공개방법 외의 행정처분을 요구한 사안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대상 안됨
64	청구인의 손배(자)청구소송의 판결 확정과정에서 발생한 의문과 관련, 공단 부산지부의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공개청구 결과 부산지부에서 공개한 정보가 미흡하고 답변내용이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용	공단에서 보유자료 재공개, 답변되지 않은 질의와 이유에 대하여는 민원으로 재처리
65	삼청교육대 관련 - 특별법 제정에관하여 직무를 수행한 내역 - 특별법 제정관련자 명단 공개	국방부	기각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문건
66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비공개